

27.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7. 31.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답 변]

□ 도축장 운영 관련 부실 시정 답변으로 인한 추가 시정질문

1. 301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카르텔’ 이라고 표현했는데 카르텔은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 이를 통해 그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이 일반적임. ‘카르텔’ 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 근거에 대해 답변 바람

- 신흥산업(주)는 1970년 시립도축장 운영대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3년간 대구시 도축장을 운영 중이며,
- 2019년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이후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의 독점적 지정을 이유로 다수의 언론보도와 청원, 진정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

2. 1981년 기준 9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신축건물을 기부채납 하였음에도 시설투자비 없이 매출만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너무나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 1981년 기준 9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중리동 1136-87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은 20년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것임
- 현재 북구 검단동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대구시가 2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개장하였으며, 개장 후에도 소독시설, 세차장, 폐수처리장 등 대구시 예산으로 시설투자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연간 9억원 이상의 대구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 2001년 개장 당시 타부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설사용료와 시장 사용료로 인하여 이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속되고 있음

3. 특정 업체가 5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표현했는데 1981년 3월 북구 검단동에 건립한 운영법인 입찰 시 3차례 모두 유찰되어 대구시의 권유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50년 넘게 독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 신흥산업(주)는 1969년 4월 설립되어 1970년 2월 대구직할시 시립 도축장 운영 대행을 시작하였으며, 53년 동안 운영한 것은 사실임
- 1981년 3월 운영법인 입찰 시 대구시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4. 법인 지정 때마다 수많은 업무 검사를 했고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4회 등을 실시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 매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개선코자 '22년 축산부류, '23년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중임

5. 축산물도매시장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함. 민간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한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와 이에 집행부는 사과의 뜻은 없는지?

- 축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법인을 지정 하는 것으로,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님

6. 대구시는 법인지정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부산물상가의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도축장과 부분육가공장이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대구시 사정에 의하여 5년 미만의 기간으로 법인 재지정)를 하거나, 특약의 형태 또는 공중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검토해보았는가?

- 도매시장 법인지정 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 5년 미만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법률 등 규정과 맞지 않음

7. • 전국 도축장 가동률이 60%인 것이 전국 도축장에 대구 지역 도축물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뜻인지?
- 대구시가 도축장 폐쇄의 파급효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 도축장 폐쇄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도 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별 대책은 무엇인지?
 - 50년 넘게 운영해온 도축장을 폐쇄할 때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되는 모든의 도축은 경북에서도 물량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모든 도축물량 처리가 가능한지?

- 현재 전국에 소·돼지 도축장이 70개가 있고, 도축장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구시 도축장이 폐쇄되어도 인근 고령, 영천, 안동, 창녕, 김해 도축장 등에서 도축이 가능함
- 도축장내의 부산물처리업체는 3개소이며, 부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고령공판장 등에서 공급받거나 수입산을 사용하므로 대구시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및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모든 도축 문제는 전국에 모돈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19개소가 있으며 가동율이 48% 정도로 1,530두 추가 도축 여력이 있고 대구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하루 200두 정도의 모돈 중 대구·경북 양돈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는 모돈 약164두는 고령공판장과 부정축산물공판장 등 분산하여 도축하면 문제 없음

8. 가스배관공사 시방서를 보면, ‘KS 또는 동등품’ 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KC와 KS는 안정성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데 KS 라고 잘못 표기한 것도 모자라 ‘동등품’ 이라는 문구까지 추가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는 대구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설계 전문업체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제작된 것임

9. 제301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축산물 도매시장 가스배관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두 사람 모두 문책수준의 경징계를 받았음. 왜 시정질문 답변에서 경징계를 중징계라고 했는가? 중징계와 경징계는 차이가 큰데,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틀린 답변을 하면 듣는 시민들은 충분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생각할 것 아닌가. 이것은 허위답변 아닌가? 경징계를 중징계라고 한 이유와 허위답변에 대한 시정조치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를 했으며,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임